

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황순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012
----------	------

발의년월일 : 2024. 07. 05.
발 의 의 원 : 황순자, 권기훈
김대현, 김태우
류종우, 박우근
박창석, 손한국
육정미, 윤권근
이동욱, 이성오
이재숙, 임인환
정일균, 조경구
(16명)

1. 제안(개정) 이유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의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민간차원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과 연계·확대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여 대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국가유산지킴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사업과 행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 마.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우수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비용추계 : 비대상

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유산 보호 사업과 국가유산지킴이 활동과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그 외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구·군, 법인, 단체 및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사항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시장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란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국가유산보호활동 육성, 지원”업무와 관련한 제4조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유형) 국가유산지킴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킴이 :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자
2. 가족지킴이 : 2인 이상 가족이 활동하는 자
3. 단체지킴이 : 초·중·고·대학교,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제4조(기본방향) 국가유산지킴이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은 국민이 국가유산을 보다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인식하고,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형성, 발전시켜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계승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